



: 2018-03-1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6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4가합557150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2. 주식회사 투어이천
변 론 종 결 2017. 11. 23.
판 결 선 고 2018. 1. 11.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투어이천은 115,618,337원,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투어이천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3. 4. 21.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3/1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7,678,578원 및 이에 대한 2013.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B 출생한 남자로 2006. 4. 1.부터 개인택시사업자로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투어이천(이하 '피고 여행사'라 한다)은 해외여행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사'라 한다)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그 상호가 2017. 11. 1.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나. 여행계약 및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4. 19. 피고 여행사와 사이에 여행기간은 2013. 4. 19.부터 2013. 4. 23.까지 3박 5일, 여행지는 태국 방콕 및 파타야, 여행요금은 왕복항공료, 해당 기간 동안의 호텔 숙박료와 식사비, 산호섬까지의 스피드보트 이용료 등을 포함하여 449,000원으로 하는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참여한 여행을 '이 사건 여행'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여행계약에 적용되는 국외여행표준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여행계약 체결시 피고 여행사가 원고에게 교부한 여행일정표 (이하 '이 사건 여행일정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1

○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표2

○ 일정

2013. 4. 21.(3일차), 파타야

호텔 조식 후 스피드 보트를 타고 산호섬으로 이동

- 산호섬에서 즐길 수 있는 추천 선택 관광
씨워킹, 파라세일링, 바나나보트, 제트스키
- 우천 시 파도가 심할 경우 산호섬 대신 다른 관광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추가정보

- 상기 일정을 빠질 경우 패널 티가 부과됩니다.
- 상기 상품은 단체관광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상품으로 투어 일정 중 개별 일정을 하실 수 없습니다(개별 일정을 원하시는 분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2) 이 사건 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여행사는 피고 보험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3. 4. 19.부터 2013. 4. 23.까지, 보험금액 1억 원까지로 하는 여행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여행상품의 내용 및 사고 경위

1) 이 사건 여행은 피고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및 숙박 등의 서비스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획여행, 즉 일명 패키지(package)여행이었다. 여행 인원은 28명이었다.

2) 원고는 여행 3일째인 2013. 4. 21. 09:30(태국 현지 시각임) 이 사건 여행일정표에 따라 스피드 보트(이하 '이 사건 보트'라 한다)를 타고 '꼬란'이라는 이름의 산호섬으로 가다가 피고 여행사 및 이 사건 보트 운행 업체와는 다른 업체에서 운행하는 또다른 스피드 보트(이하 '가해 보트'라 한다)가 이 사건 보트의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여 밀고 들어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보트가 침몰하였다(이하 위 보트 충돌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의 부상 및 치료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다리 중 무릎 이하가 절단되었고 좌측 대퇴부, 우측 원위 대퇴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고 현지(파타야)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 및 치료를 받았고, 2013. 5. 6.경부터 2013. 5. 1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입원 및 수술적 치료를 받았고, 2013. 5. 16.부터 2013. 7. 5.까지 C병원에서 입원 및 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결과, 외교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기획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제1항의 증거들 및 갑 제19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 여행사의 가이드는 법정 탑승인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여행객들을 이 사건 보트에 탑승시켰던 사실, 위 가이드는 이 사건 보트에 일부 여행객을 탑승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간과한 채 이 사건 보트를 산호섬으로 출발시켰고 이 때문에 이 사건 보트가 남겨진 여행객의 탑승을 위하여 출발지인 파타야 항구로 되돌아오게 된 사실, ② 남겨진 여행객을 탑승시키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이 사건 보트가 산호섬으로 가는 원래의 항로를 이탈하게 하였고 산호섬 앞



해상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항로 이탈과 과속은 일반적으로 선박 사고의 가능성을 높이는 점, ③ 피고 여행사의 가이드나 이 사건 보트의 운전자는 피고 여행사의 고용인으로 봄이 상당한바, 가해보트 운전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주된 원인이기는 하나 피고 여행사 가이드 및 이 사건 보트 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여행사의 고용인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보여, 피고 여행사는 이 사건 약관 제8조의 내용에 따라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여행사와 여행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자신도 신체안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는 이 사건 쾌속정에 탑승함으로써 위험을 감수하였으므로, 최소한 30% 이상의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트를 타고 산호섬에 가는 일정은 이 사건 여행에 포함된 필수 코스였고, 그곳에 간 후 선택관광을 할 수 있었던 사실, 이와 같은 일정이 이 사건 여행일정표에도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보트를 타고 산호섬에 가는 일정과 관련한 사고 위험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나아가 이 사건 여행일정표에는 필수 코스 일정을 빠지는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고 개별 일정을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여행에 참여한 이상 이 사건 보트를 타고 산호섬에



갈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와 같은 처지의 원고에게 스스로 이 사건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상하여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이 사건 사고 및 그에 따른 부상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책임 제한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14. 10. 29.까지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고, 택시운전자의 가동연한도 만 60세가 될 때까지이나(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 6665 판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243 판결 등 참조),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의 가동연한을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 등 참조), 갑 제 4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70세에 이를 때까지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63세 남짓으로 이미 60세를 넘어섰으나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종사하기 곤란한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7. 31. 기준으로 전국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중 70세 이상이 약 7.43%, 60세 이상이 약 43.78%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경력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 분야의 인식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65세가 되는 2014. 10. 29.까지는 개인택시 운전사로 일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직업 및 소득실태 : 개인택시 운수업, 월 2,103,916원(2012년도 고용형태근로실태조사보고서 상의 경력 5년 이상 자동차운전원 남자의 월급여 1,800,000원 및 연간특별급여 3,647,000원의 1개월 분 303,916원의 합계액)

라) 노동능력상실률

(1) 여행에서 돌아오기로 예정된 날의 다음날인 2013. 4. 24.부터 입원기간의 말일인 2013. 7. 5.까지 : 100%

(2) 2013. 7. 6.부터 2014. 10. 29.까지 : 48% (좌측 무릎과 고관절 사이의 절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절단 III-2, 직업계수 6 적용)

2) 기왕 치료비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12,483,094원을 지출하였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 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으로 2014. 6. 18. 1,067,090원, 2015. 5. 7. 1,036,19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기왕치료비는 10,379,814원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치료 양상 및 경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위 치료비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중 상급병실 이용료 2,968,000



원과 진단서 및 증명료 10,000원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라고 다
튼다.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입원료 비급여
항목으로 2,968,000원, 진단서 및 증명료로 1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입원료 비급여 항목은 상급 병실 이용료로 추인할 수 있기는 하다.

상급 병실 이용료 부분에 관하여 본다. 불법행위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
지 아니하고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
당의 손해는, 당해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
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
지 아니한다면,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 및 상
해 정도와 상급병실의 이용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상급병실을 사용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2,968,000원의 지출은 이 사건 사고와 상
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진단서 및 증명료에 관하여 본다.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명서의 발급에 소
용되는 비용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483, 484 판결 등 참조), 진단서 및 증명료 10,000원은 이 사
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향후 치료비

금속제거술 비용 4,000,000원(변론 종결일까지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4) 개호비

원고는 1일 노임 단가 83,975원을 적용하여 30일분의 개호비로 2,519,25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에게 개호가 필요하였던 시기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2013. 4. 21.부터 30일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2013. 1. 1.부터 2013. 8. 31.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는 81,443원이므로, 개호비는 2,443,290원이다(위 83,975원은 2013. 9. 1.부터 2013. 12. 31.까지의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다).

5) 보조구 비용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축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실리콘 라이너 현가 장치(보조구)는 23,500,000원으로 다른 현가 장치에 비하여 절단단의 편안함을 제공하고 강한 현가력을 발휘하므로 최근 현가 장치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에게 적합한 보조구는 위 실리콘 라이너 현가 장치로 볼 여지가 있으나, 현재 원고가 이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축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0. 6. 절단된 무릎 이하의 보조구로 유압식 보조구를 11,000,000원에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 유압식 보조구 및 실리콘 라이너 현가 장치 모두 그 내구 연한은 5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발전된 슬관절일수록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가격도 매우 비싸지는데 무조건 비싸고 최신의 슬관절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는 단순한 방식의 슬관절을 사용하다가, 환자의 신체기능이 좋고, 보행이 원활할 경우 좀 더 발전된 슬관절로 교체하여 시도해보는 것이 일반적인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에게 처음부터 적합적 보조구는 위 실리콘 라이너 현가 장치로 볼 수 없고, 처음에는 현재 사용하는 유압식 보조구가 원고에게 적합한 보조구였다가 그 내구연한이 다하는 2018. 10. 6.경 실리콘 라이너 현가 장치로의 교체를 시도하여 위 실리콘 라이너 현가 장치가 원고에게 적합한 보조구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 5)항의 인정 근거] 위 기초사실, 갑 제6, 9,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보완신체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6) 공제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가해 보트 측 보험사로부터 76만 바트, 피고 보험사로부터 65,326,993원, 삼성생명으로부터 보험금 54,3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각 돈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 중 피고 보험사로부터 받은 65,326,993원, 삼성생명으로부터 받은 54,300,000원에 해당하는 보험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피고의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보험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보험과 달리 인보험인 상해보험의 경우 상법 제729조에 따라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대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각 돈이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가해 보트 측 보험사로부터 2013. 5. 3.경 76만 바트를 지급받았다는 사실, 2013. 5. 3. 기준 1바트는 36.99원인 사실은 외교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손해배상금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28,112,400원(76만 바트 × 36.99원)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돈은 민사상 손해배상절차와는 별도로 지급된 일종의 위로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다.

7) 위자료에 관하여

가)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및 그에 대한 원고의 인식 및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인정금액 : 50,000,000원

8)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여행사는 115,618,337원, 피고 보험사는 피고 여행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보험금액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4. 21.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함종식



.
.
: 2018-03-19

판사 이소민

판사 차윤제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

사건번호	2014가합667160	진명	손해배상(기)
성명		유형	부상
장년(남1,여2)	1	사고시 연령	65세 5개월 22일
생년월일		기대연령	18.88년
사고 발생일	2018-4-21	역명 종료일	2028-10-27
가동연령(세)	65	가동 종료일	2014-10-28

<노동능력상실률>

개발수준	률	중복지산
45.00%		45.00%

【입실수입】

기간	기간	기간	입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포면1	m2	호포면2	m1-2	최종호포면	기간입실수입
1	2018-4-24	2018-7-6		2,308,918	100.00%	2	1.8575	0	0.0000	2	1.8575	4,181,686
2	2018-7-6	2014-10-28		2,308,918	45.00%	18	17.6221	2	1.8575	18	15.8648	15,458,100
6												
4												
6												
6												
7												
8												
8												
10												
입실수입 합계액(원)												19,639,786

【기타 손해】

(1) 향후 치료비 (수요금액) (지급시기) m (사고시현재)

가. 반근로계손				0원
나. 금속계손	4,000,000원	2017-11-28	65	8,254,000원

(2) 기종 개조비 (외교일수) (일비용) (총액)

	87일	81,448원	2,448,290원
--	-----	---------	------------

(3) 향후 개조비 0원

(4) 기종 치료비 10,878,814원

(5) 보조구 57,888,000원

입실수입+기타손해 98,780,787원

【과실상계】

과실상계후 계산상 손해 0% 98,780,787원

【공제】

자급치료비 0원 중 최고 과실분 0원

손해배상 선급 25,112,400원

【재산상 손해 배상액】

66,818,987원

【위자료 및 합계】

종류	위자료	재산상 손해	재산상 손해+위자료	상속지분	상속금액	과실률
합계	50,000,000	66,818,987	116,818,987			



: 2018-03-19

사건: 2014가합557150

성명:

보조구손해 합계

57,986,000

종류:	실리콘 라이너	수명:	5	년
단가:	11,000,000			
최초필요일:	2013-10-6	수치합계:	0.9795	
필요최종일:		비용총액:	10,774,500	

종류:	라이너	수명:	5	년
단가:	23,500,000			
최초필요일:	2018-10-6	수치합계:	2.0090	
필요최종일:	2029-10-27	비용총액:	47,211,500	

순번	필요일시	필수	호프수치
1	2013-10-6	5	0.9795

순번	필요일시	필수	호프수치
1	2018-10-6	65	0.7868
2	2023-10-6	125	0.6575
3	2028-10-6	185	0.5647